

# 공 고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7 - 13호

「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7년 7월 5일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개정이유

관련법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,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노력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관련법의 변경에 따른 내용 반영 (안 제5조제2호)

- '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)'를 '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대보호구역'으로 변경

나.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 추가 (안 제5조제3호, 제4호)

-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,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(안 제8조, 제9조, 제1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**2017년 7월 10일까지**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 등

다. 보내실 곳 :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(등촌2동 512-1) 강서구의회  
(전화 : 2600-1807, 팩스 : 2600-1840)

## 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절대보호구역

제5조제3호,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

4.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

제8조제1항 전단 중 “지정한”을 “지정하였을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후단 중 “지정하여”를 “지정해”로 한다.

제17조제3항 중 “단체에게”를 “단체에”로 한다.

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)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학교정화구역(「학교보건법」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을 말한다)</u>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3. 4. 5. (생략)</p> <p>제8조(금연구역 표시)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<u>지정한</u>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9조(흡연구역 등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	<p>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「<u>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<u>절대보호구역</u></p> <p>3. <u>어린이집 경계로부터 10m 이내 지역</u></p> <p>4. <u>가스충전소 및 주유소</u></p> <p>5. 6. 7. (현행 제3호,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)</p> <p>제8조(금연구역 표시) ① ----- ----- <u>지정하였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(흡연구역 등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

③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화장실, 복도, 계단,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2. (생략)

④ (생략)

제17조(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)

① ~ ② (생략)

③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·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.

③ -----  
-----.

1.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  
----- 지정해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)

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 
----- 단체에 -----  
-----  
-----.